

<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>

1. 원칙

$\text{산출세액} = \text{종합소득 과세표준} \times \text{기본세율}^*$

*〔간편법〕 속산표에 의한 계산방식

과세표준	산출세액
1,200만원 이하	과세표준 × 6%
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과세표준 × 15% - 1,080,000
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과세표준 × 24% - 5,220,000
8,800만원 초과 1억 5,000만원 이하	과세표준 × 35% - 14,900,000
1억 5,000만원 초과	과세표준 × 38% - 19,400,000

2.〔특례1〕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의 특례

(1) 금융소득이 2,000만원 초과시 산출세액 : max(㉠, ㉡)

㉠ 일반 산출세액 $20,000,000 \times 14\%(9\%)*^1 + (\text{과세표준}-20,000,000) \times \text{기본세율}(\text{이하 't'라 함})$ ㉡ 비교 산출세액 = max(㉢,㉣) ㉢ (과세표준 - 금융소득금액*²) × t + 금융소득총수입금액*³ × 14%(비영업대금이익 25%, 고배당기업 주식배당 9%) ㉣ (과세표준 - 금융소득금액 -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) × t + 금융소득총수입금액 × 14%(비영업대금이익 25%, 고배당기업 주식배당 9%) + 출자공동사업자 등에 대한 배당소득 × 14%

*¹ ㉠ 이 경우 20,000,000의 구성순서는 이자소득 → G-UP 제외대상 배당소득 → G-UP대상 배당 중 고배당기업주식의 배당소득 → 기타의 G-UP 대상 배당소득

㉡ 9%는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을 말함

*² 금융소득금액에는 귀속법인세(G-UP금액)가 포함된 금액임

*³ 금융소득총수입금액에는 귀속법인세가 포함되지 않으며,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도 제외된 금액임.

(2) 금융소득이 2,000만원 이하시 산출세액 : max(㉠, ㉡)

비교 산출세액 = max(㉠, ㉡)

㉠ (과세표준 - 금융소득금액^{*2}) × t + 금융소득총수입금액^{*3} × 14%(비영업대금이익 25%, 고배당기업 주식배당 9%)

㉡ (과세표준 - 금융소득금액 -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) × t + 금융소득총수입금액 × 14%(비영업대금이익 25%, 고배당기업 주식배당 9%) + 출자공동사업자 등에 대한 배당소득 × 14%